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19가단52399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엄태모, 김경울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상

변론 종결 2021. 1. 13.

판결 선고 2021. 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하여 2019. 4. 29.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 분할 약정을 1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253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상 채권: 520,400,131원 및 그 중 479,311,816원에 대하여 200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 C는 망 D(2019. 4.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다. 망인은 사망 당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비롯한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C는 망인의 사망 후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3854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9. 7. 29.경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인 피고(망인의 배우자이자 C의 모), H(망인의 자녀), I(망인의 자녀)는 2019. 8.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4.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피고 지분: 5/9, H, I 지분: 각 2/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지분 2/9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가 이후 타에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곤란하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위 2/9 지분에 대한 가액 상당을 반환하여야 하며, 원고는 사해행위 당시 목적물 가액인 488,888,888원 중 일부금인 150,000,000원에 대하여 일부청구를 한다.

3. 관련법리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이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이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다.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4. 판단

이 사건 아파트 중 C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C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C가 당초 상속재산 분할협약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협약의 내용이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C의 상속포기 신고가 이후 수리됨으로써 상속포기의 효과가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약은 C의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를 들어 C가 상속분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피고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분할협약을 한 것으로 볼수는 없다.

한편, 상속의 포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사해행위의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신영

별 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아파트 동

1층 408.16㎡ 2층 382.36㎡

3층 382.36㎡ 4층 382.36㎡

5층 382.36㎡ 6층 382.36㎡

7층 382.36㎡ 8층 382.36㎡

9층 382.36㎡ 10층 382.36㎡

11층 382.36㎡ 12층 382.36㎡

13층 382.36㎡ 14층 382.36㎡

15층 382.36㎡ 지층 37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 78636.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4.55㎡

(대지권의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소유권대지권, 136 소유권대지권
189741분의 129.77
10701분의 5.62

- 이 상 -